

돼지콜레라 도·시군 대책본부 운영계획

(사)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

도 대책본부 운영계획

목적 : 도 단위 돼지콜레라 박멸사업 효율적 추진

□추진방향

- 양돈업계 총괄적인 박멸사업
- 양돈협회, 양돈축협, 축협중앙회, 농협 등 양돈 생산자 조직 총 가동
- 비상대책본부 참여단체 효율적 역할 분담
- 소규모 양돈농가를 주 대상으로 사업 진행(자돈 구입 농장, 자돈 판매 농장 포함)
- 양돈농가 자발적 참여 최대한 유도

도 대책본부 임무

- 도 단위 돼지콜레라박멸협의회 운영
- 시·군 돼지콜레라 방역단 활동상황 확인·관리
- 시·군 돼지콜레라 방역요원 활동 수시점검 및 문제점 파악 보고
- 시·군 돼지콜레라 방역단 운영비 지급 및 관리
- 돼지콜레라 방역관련 각종 문서 접수·발송
- 중앙 대책본부에 주 단위 활동 상황 보고
- 도 단위 비상대책본부 참여 단체 연락 및 역할 조정
- 기타 도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

도 대책본부 운영

- 양돈협회 도협의회장, 양돈축협 조합장, 축협도 지회장 등 생산자단체 공동대표로 운영, 공동대표간 협의후 상근대표 결정
- 법인격 : 사단법인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의 지역본부로 등록 추진
 - 도 대책본부 위원 : 중앙대책본부장 명의 위촉

장 5월 17일 발급

- 도 대책본부 간판(현판) 제작 공급(5월 19일까지 도착예정)

○사무실 : 양돈협동조합, 축협지부, 양돈협회등의 기존 사무실 활용, 비용 최소화운영 원칙

- 사무실 집기(기본안) : 책상 2개, FAX 1대, 전화 1대

○운영비 지원내용

- 상근직원(간사 1명, 여직원 1명) 급료지원

• 간 사 : 보수 1,500천원/월, 차량 소유자 + 양돈

방역경험자

• 여직원 : 월 600천원

- 통신비, 회의비, 출장여비 지원

도 대책본부 상근인력 자격기준안

- 도 대책본부 상근 간사 자격기준(안)
 - 수의학 또는 축산학을 전공한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양돈업계 3개월 이상 근무 경험자
 - 축산학 관련 2년제 대학 졸업자로 양돈업계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자
 -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양돈업계 1년 이상 근무 경험자
 - 지방 출장 가능한 자
 - 위 자격자 중 본인차량 소유시 우선 배치
- 도 대책 본부 상근 여직원 자격기준(안)
 - 경리업무 1년 이상 경험자
 - P·C 운영 가능한자

시·군 돼지콜레라 방역단 운영방안

시·군 공동방역사업실시단 설치현황

○1998년까지 공방단 설치 시·군 : 53개소(지역축

협 38개소, 양돈협회지부 15개소)

○1999년 5월까지 공방단 설치 시·군: 10개소(총 12개소중 2개소는 기존지역 주관단체 변경)

○양돈분야 공방단 미설치 시·군: 102개소

양돈분야 공동방역실시단 기 설치 시·군

○기존 공동방역사업실시단을 돼지콜레라방역단으로 우선 활용

- 방역전담자 배치 계획 및 활용계획 등 돼지콜레라박멸사업계획서를 시·군을 경유하여 도 대책본부에 제출

- 도 대책본부에서 계획서 검토하여 돼지콜레라방역단 선정후 중앙대책본부에 보고

- 돼지콜레라방역단 지정 및 방역전담자 배치인원에 대한 지원

양돈분야 공방단 미설치 시·군: 돼지콜레라 방역단 신규 설치 추진

○시·군 돼지콜레라 방역단 설치 신청

- 신청대상지역: 기존 양돈방역사업실시단 미설치지역 (별첨)

- 신청대상: 지역축협, 양돈협회 지부, 양돈단지 대표 등 협의체

- 신청접수: 시·군 축산과(계)에 신청접수, 검토한후 도에 제출

시·도 축산과에서는 도 대책본부와 협의후 농림부에 제출

○시·군 돼지콜레라방역단 선정

- 농림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, 사단법인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선정

- 선정기준

• 해당지역 양돈 농가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 (향후 2년간 사업계획)

• 방역 전담 요원 채용, 활용계획 및 방역장비 활용 계획 내용

• 시·군 돼지콜레라방역협의회 운영 실적 또는 계획

• 관내 양돈농가가 30호 이상인 시,군 우선 선정

시·군 돼지콜레라방역단 임무

○관내 양돈농가 현황 파악 및 돼지콜레라박멸 관련 실태조사

○관내 양돈농가 분류, 관리대상 농가 위주 집중 관리

○관내 돼지콜레라 예방약 공급, 접종 확인·감시 활동

○관내 소규모 양돈농가 예방약 시술(교육) - 자가접종 불가능 농가 우선 지원

○돼지콜레라 예방약 공급 내역 확인(시·군청 협조)

- 동물약품 대리점 협조 (월 1회 예방약 공급내역 통보)

○관내 돼지콜레라 박멸 협의회 운영(시·군청 협조)

○시·군 돼지콜레라 박멸 각종 문서 접수·발송

○도 대책본부 또는 중앙 대책본부에 정기적인 활동보고

○비상대책본부 참여 단체별 시·군 조직 역할 분담·조정

○방역단 장비 관리·점검

○양돈 농가 채혈 검사 지원

○기타 돼지콜레라방역에 필요한 사항

시·군 돼지콜레라방역단 방역전담요원 배치기준

○수의학 및 축산학을 전공한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양돈업계 3개월 이상 근무 경험자

○축산학 관련 2년제 대학 졸업자로 양돈업계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자

○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양돈업계 1년 이상 근무 경험자

○위 자격자중 본인차량 소유시 우선 배치

○시·군 돼지콜레라방역단 지원내용

○방역장비 지원: 돼지콜레라 방역단 신규설치시 필요장비 지원

- 냉장고 1대(1,000ℓ용)

- 휴대용 냉장 BOX 등 필수장비

○운영비 지원 : 회의비, 통신비, 일회용방역복 구입등 방역단 운영비 지원

○돼지콜레라방역단 방역요원 지원

- 사단법인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에서 방역요원 인건비 지원

행정지원 내용

○돼지콜레라 방역단의 동물병원 개설시 소속 수의사를 공수의로 우선 위촉

○공수의 수당을 시술비로 전환하여 돼지콜레라 방역단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시술비 지원

○시·군 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과 시·군 가축방역관(공수의 포함)의 참여 의무화 조치

전국 양돈농가 실태조사사업

목적

전국 각 시·군별 양돈농가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실정에 맞는 사업을 벌려 나감으로써, 돼지콜레라 방역단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,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박멸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사업을 실시한다.

사업방향

양돈농가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대상 농가를 분류하고 이 농가들을 중심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점차 관리대상 농가수를 최소화 시켜서 각 시·군별 100%예방접종 유지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.

실태조사 주요 내용(별첨)

- (1) 개별 농가 돼지콜레라 박멸사업 참여 동의서
- (2) 개별 농가 돼지 사육 일반사항
 - 사육규모, 사육형태, 직원수, 모돈두수, 자돈·후보돈 구입처
- (3) 개별농가 돼지 콜레라 예방약 접종 관련사항
 - 돼지콜레라 예방약구입처, 접종시기, 접종방법.

접종시 인원, 월 단위 접종두수, 접종대장 비치 여부
(4) 돼지콜레라 예방약 접종대장 전달 및 사용방법 설명

(5) 돼지 이동·출하시 돼지콜레라 예방약 접종 확인서 작성요령 교육·홍보

(6) 관리대상 농가 분류 -농가 위치 파악

시·군별 실태조사 사업

(1) 시·군별 양돈농가 기초조사(1차 실태조사)

1) 조사담당 책임 해당 시·군 축산담당 과장(계장)

2) 조사자

① 읍·면·동사무소 축산(산업)담당 공무원

② 농업기술센터 직원

③ 양돈방역사업설치단 설치 시·군은 방역단장 또는 방역전담자

④ 동물약품 대리점 직원(자원봉사자)

⑤ 공수의

⑥ 검역원 관계자

(2) 시·군별 양돈농가 실태조사(2차 실태조사) 및 점검

1) 1차 실태조사시 미비사항 조사

2) 관리 대상농가 선정 - 정기적 방문 점검, 예방약 접종대장 점검, 월1회 이상 실시

3) 조사·관리 책임 : 해당 시·군 축산담당 과장(계장), 양돈방역단 설치 시·군은 방역단장과 공동책임

4) 조사·관리자 (읍면별 관리대상농가별 담당자 지정)

① 읍·면·동사무소 축산(산업)담당 공무원 - 읍·면·동사무소에 관리대상 농가 점검일지 비치

② 돼지콜레라방역단장, 방역전담 요원

③ 농업기술센터 직원

④ 공수의

⑤ 동물약품 대리점 직원(자원봉사자)

⑥ 양돈협회 지부

⑦ 공익근무 요원중 방역교육 이수자

⑧ 기타

